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8471 판결 [임차권확인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847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나722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가단412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B

판결 선고 2015. 2. 26.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나72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원고와 G의 기만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별지